

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 람	기관위원장

제949호 2013. 3.22(금)

차 례

고 시

-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3-19호 인천도시관리계획(연희3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----- 1
-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3-20호 인천도시관리계획(시설:녹지)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----- 3

공 고

-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-335호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(안) 입법예고 ----- 6
-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-336호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(안) 입법예고 ----- 8
-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-341호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 작성에 따른 공고·열람 ----- 10

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3 - 19호

인천도시관리계획(연희3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인천도시관리계획(연희3지구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(☎560-4763)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립니다.

2013. 3. 21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(변경 없음)
2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(변경 없음)
 : 별첨(공람장소에 비치된 지형도면과 같음 : 구보 게재 생략)
3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연번	기 정				변 경				비 고
	가구 번호	획 지		분할가능선	가구 번호	획 지		분할가능선	
		위치	면적(m ²)			위치	면적(m ²)		
1	27	1	1,699.6	2	27	1-1	978.5	1	획지 분할
						1-2	721.1	-	

4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

도시계획결정 조서 (변경 없음) : 별첨(공람장소에 비치된 지형도면과
같음 : 구보 게재 생략)

5.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: 주차장 출입구(권장) 위치 변경 (공람장소에 비치된 지형도면과 같음 :
구보 게재 생략)

6. 지형 도면 : 별첨(공람장소에 비치된 지형도면과 같음 : 구보 게재 생략)

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3 - 20호

인천도시관리계획(시설:녹지)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
도시계획시설 (시설:녹지)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』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고시 및, 인천도시계획시설(시설:녹지, 사업명:서부일반산업단지 내 제1호 완충녹지 조성공사) 사업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(변경)작성 고시합니다.

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(560-4763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.

2013. 3. 22.
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1. 결정내용 : 지적측량결과에 따른 면적정정사항 반영
2. 위 치 :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692-2번지 일원
3. 면적 및 규모

도시계획시설(녹지) 결정(변경) 조서

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치	면적(m ²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①	녹지	완충녹지	서구 경서동 692-2번지 일원	8,063.5	감)19.4	8,044.1	인고 제1993-69호 (1993.6.19)	

■ 결정(변경)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위치
①	녹지	▶ 면적변경 :8,063.5㎡→8,044.1㎡ 증) 19.4㎡	· 지적측량결과에 따른 면적정정

4. 지형도면 : (변경없음)

【서부일반산업단지 내 제1호 완충녹지 조성공사】

1. **변경사유** : 지적측량결과에 따른 면적정정사항 반영
2. 사업시행지 :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363-137번지 일원
3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 - 【종류】 도시계획시설(녹지)사업
 - 【명칭】 서부산업단지 내1호 완충녹지 조성공사
4. 사업의 면적(변경)
 - 【당초】 1,100㎡
 - 【변경】 1,082㎡
5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【성명】 LG전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구본준
 - 【주소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
6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: 실시계획인가일 ~ 2013. 03. 31
7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, 지번,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(변경) : 붙임과 같음
8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(변경) : 붙임과 같음

토 지 조 서 (변 경)

연번	구분	소재지	지번	지목	공부상 면적 (㎡)	편입 면적 (㎡)	소유자		관계인			비고
							성명 또는 명칭	주소	성명 또는 명칭	주소	권리의 종류 및 내용	
1	당초	인천 서구 경서동	363-136	장	335	56.3	LG전자 주식 회사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				
1-1	변경	인천 서구 경서동	363-327	장	162	162	LG전자 주식 회사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				분할에 따른 지번 및 면적정정
2	당초	인천 서구 경서동	363-137	장	3,282	567.2	LG전자 주식 회사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				
2-1	변경	인천 서구 경서동	363-328	장	452	452	LG전자 주식 회사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				분할에 따른 지번 및 면적정정
3	당초	인천 서구 경서동	363-151	장	581	476.5	LG전자 주식 회사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				
3-1	변경	인천 서구 경서동	363-329	장	468	468	LG전자 주식 회사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				분할에 따른 지번 및 면적정정

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 - 335호

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 조례(안) 입법예고

『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』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『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관한조례』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3년 3월 21일

인천광역시 서구 청 장

1. 조 례 명 :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(안)

2. 개정이유

○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현행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하고,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대규모점포 등 종사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을 도모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(2013.1.23)안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○제14조의2 제1항 단서조항 중 “연간 총매출액 중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은 제외한다.”를 “연간 총매출액 중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.”로 하고

○ 1호의 1. 영업시간의 제한 : “오전 0시부터 오전8시까지의 범위에서”를 “오전0시부터 오전10시까지의 범위에서”로 하고

○ 2호의 2. 의무휴업일 : “매월 1일 이상 2일 범위에서”를 “매월 공휴일 중 이들을 지정하되,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4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, 개인은 **2013년 4월 10일까지**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(참조 : 경제지원과장, ☎ 560-4431 , Fax 560-2730)에게 서면 또는 전화(팩스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의견 제출자의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

붙임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(안)

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

**『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점포의
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』 일부개정조례(안)**

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점포의
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2 제1항 단서 중 “51퍼센트”를 55퍼센트”로 한다.

같은 조 같은 항 제1호,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영업시간의 제한 :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
2. 의무휴업일 : 매월 공휴일 중 이틀을 지정하되,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 - 336호

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(안) 입법예고

『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』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『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관한조례』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3년 3월 21일

인천광역시 서구 청장

1. 시행규칙명 :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(안)

2. 제정이유

○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(SSM)에 대한 영업규제가 시행되었고 영업제한 근거가 되는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영업제한(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지정)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제3조제1항
 - 영업시간 제한 :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
 - 의무휴업일 :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정함

4. 의견제출

이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, 개인은 2013년 4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(참조 : 경제지원과장, ☎ 560-4431, Fax 560-2730)에게 서면 또는 전화(팩스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의견 제출자의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

붙임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(안)

『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』(안)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인천광역시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)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인천광역시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

1. 영업시간 제한 :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
2. 의무휴업일 :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

② 조례 제15조의2제1항 단서를 적용받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등은 신청일 이전 연간 총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(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과세증명서 등을 말한다)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증빙 서류를 제출한 대규모점포 등이 그 다음 년도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.

④ 구청장은 대규모 재난·재해의 발생으로 생필품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 할 때에는 한시적으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유보(留保)할 수 있다.

제3조(처분의 사전통지) 구청장은 제2조 제1항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명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 - 341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 작성에 따른 공고·열람

인천광역시 고시 제1999-80호(1999.06.23)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인천 서구 마전동 1070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[도로(소2-2호선), 사업명: 당하지구 소2-2호선 도로개설공사(미집행 구간)]사업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,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작성하고 이를 공고하고자 합니다.

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(560-5774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3. 03. 22.
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1. 사업시행지 :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070번지 일원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 - 【종류】 도시계획시설(도로:소2-2호선)사업
 - 【명칭】 당하지구 소2-2호선 도로개설공사(미집행 구간)
3. 사업의 규모 : 도시계획시설(도로:소2-2호선) L=198m, B=8m 중
미집행 구간 L=80m, B=8m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【성명】 인천광역시 서구청장
 - 【주소】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(심곡동 244번지)
5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: 2013. 04. ~ 2013. 12. 31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, 지번, 지목 및 소유권
이외의 권리명세 : 아래와 같음
7. 열람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
■ 토지 조서

소재지	지 번	지목	공부상 면적 (㎡)	편입 면적 (㎡)	소유자		비고
					성명	주소	
마전동	1070	도	7,804.7	754	인천광역시 서구		

■ 지장물 조서

연번	소재지	지번	물건의 종류	구조 및 규격	수량 (㎡)	소유자		비고
						성명	주소	
1	-1	마전동	1070	창고	스레트	3.0	인천시 서구	
	-2	"	"	가옥	목조	36.0	"	
	-3	"	"	V.H	철골비닐	6.0	"	
	-4	"	"	V.H	철골비닐	11.0	"	
2	-1	마전동	1070	가옥	블록스레트	83.0	인천시 서구	
	-2	"	"	창고	스레트	4.0	"	